■ 자동차등록규칙 [별지 제5호의3서식] <개정 2011.10.31>

사용자(등록 · 해지) 신청서

※ 어두운 칸은 작성하지 마시고, [ ]에는 해당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자	발급일자	처리기간 3일

신청인	상호(명칭)		
	성명		주민등록번호
	전자우편주소	전화번호	휴대전화번호
	사업장주소		법정동 코드

신청인 소속 관리자	성명	주민등록번호
	전자우편주소	휴대전화번호
	※ 이전등록 신청 목적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.	

사용자 등록목적	[ ] 신규등록 신청 [ ] 이전등록 신청 [ ] 말소등록 신청(수출이행여부의 신고)

「자동차등록령」 제6조의2제1항 및 「자동차등록규칙」 제1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전산정보처리조직 운영기관의 장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재직증명서 등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와 사무소의 소재지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2. 「자동차등록령」 제1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	수수료
전산정보처리조직 운영기관의 장 확인사항	1.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(종사원 정보) 2.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	전산정보처리조직 운영기관의 장이 정한금액 (사용자 해지 신청은 없음)

유의사항

○ 사용자 등록 신청이 가능한 자

1. 「자동차관리법」 제8조제3항, 제12조제2항 또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 갈음하여 등록사무 신청이 가능한 자
2. 「자동차관리법」 제8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제작·판매자 등의 대표자
3. 「자동차관리법」 제67조에 따른 조합(연합회 포함) 등의 대표자

○ 구비서류

1.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: 재직증명서, 해당 조합 또는 연합회에서 종사원임을 증명하는 증명문 등
2. 「자동차등록령」 제1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: 사업자등록증,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

○ 신청인 소속 관리자

- 신청인 소속 관리자는 이전등록 신청 대상자에 한하며, 매매상사의 대표자를 말합니다.
- 신청인과 신청인 소속 관리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도 모두 작성하여야 합니다.

○ 개인정보 사항은 전자신청 시 공인인증서 확인을 위함이고, 휴대전화번호와 전자우편(이메일)주소는 귀하의 사용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용되오니 변경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10㎜×297㎜(일반용지60 g/㎡)